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에 지역복지 등 전문가 포함 >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395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에 지역복지 등 전문가 포함	2

I. 개요

1.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39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1. 28.

(3) 회 부 일 : 2026. 1. 29.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은 근로자·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에 관한 현실적인 논의가 어려운 까닭에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같이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호다목).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에 지역복지 등 전문가 포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나. (생략) <u>다.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라. (생략) ④ ~ ⑨ (생략)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 ----- 가.·나. (현행과 같음) <u>다. 사회보장, 지역복지(「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다),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라. (현행과 같음) ④ ~ ⑨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¹⁾로, 위원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당연직 정부위원 15명과 위촉직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됨.

< 제6기(2026.1.23.~2028.1.22.)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

당연직(15)	위촉직(15)
국무총리(위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기획예산처 장관(부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교육부 장관(부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보건복지부 장관(부위원장)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
법무부 장관	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
행정안전부 장관	수원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국가보훈부 장관	분당서울대학병원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법률사무소 정립 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용노동부 장관	용산구 구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송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국무조정실장	백석대 간호학과 교수

1)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3.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
4.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우선순위
5.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사회보장정책
6. 사회보장급여 및 비용 부담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8.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9.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10.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통계
11. 사회보장정보의 보호 및 관리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1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2. 제2항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한 결과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및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건복지부장관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 등을 주요 기능²⁾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책은 경제 상황, 고용 구조, 인구 구성, 지역별 여건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므로, 중앙정부 중심의 관점만으로는 정책의 집행 가능성과 현장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사회보장제도는 중앙정부가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별 인구구조, 재정 여건, 복지 수요 등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2)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12.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검토가 가능해지고, 중앙정부의 정책 설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사이의 괴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최근의 경제환경과 노동시장은 고용 형태의 다변화, 경기 변동성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에 탄력적이고 정교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경제·고용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환경을 보다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으므로³⁾, 개정안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제7기 사회보장위원회 구성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서 적용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3)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각 목의 위원이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등에 관한 현실적 논의를 위해 지역복지 분야 전문가의 위촉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사회보장과 연관성이 높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함.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	-------------------

- **(법적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 **(목적)**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조정(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위원 15인,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 이내(위원 위촉권자 : 대통령)

위원회	- 구성 : 30인 이내 (총리, 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5, 민간위원 15)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 간사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실무위원회	- 구성 : 30인 이내 (복지부장관,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 15, 민간위원 15) - 위원장 : 2인 (복지부장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 * 간사 : 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전문위원회	- 구성: 5개 전문위 (기획, 제도조정, 평가, 재정, 통계·행정데이터) * 본위원, 실무위원, 관계전문가로 구성(전문위원회별 각 15인 이내)

- **(기능)**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
 -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우선순위 설정, 중앙 행정기관 간 사회보장정책 심의,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비용 분담
 -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사회보장통계 등
- **(주요연혁)**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시행('13.1.)으로 출범
 - 제1기('13.5.1.~'15.4.30.), 제2기('15.6.10.~'17.6.9.), 제3기('17.12.26.~'19.12.25.), 제4기('20.3.9.~'22.3.8.), 제5기('22.11.22~'24.11.21.), 제6기('26.1.23.~'28.1.22.)